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1과-17206
등록일자	2015.8.27.
결재일자	2015.8.27.
공개구분	부분공개

★주무관	법인1팀장	세무1과장	기획경제국장		
최지현	성기환	이상규	08/27 김용운		
협조자	법인2팀장 이영범				

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계획

■ 근거

- 지방세기본법 제47조 및 지방세법 제7조
- 서울특별시 세무과 - 19298(2015.8.24)호 『비상장법인 과점주주(기타주주) 간주 취득세 일제 조사 추진』

■ 추진 배경

- 현재 국세청에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정보 제공시,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공하고 있음
-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이 탈루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
-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기타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사 필요 발생

■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15. 8. 28 ~ 9. 18
- 조사대상 : 2010~2013년 지배주주 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과점주주(기타주주)
- 조사내용 : 주주의 주식변동 자료, 법인 장부, 세무종합시스템을 연계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

■ 행정 사항

-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후 결과 제출(동담당) : 2015. 9. 18 까지
-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후 결과 보고(서울시 세무과): 2015. 9. 22

2015. 8. 27.

강 남 구
(세 무 1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지방세기본법 제47조 및 지방세법 제7조</p>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· 추진경위 : 국세청의 비상정법인의 과점주주 정보 제공시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자료 제공 누락으로 취득세등이 탈루되는 사례 발생.</p>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대상 : 공무원 ----, 일반주민 : ----, 특정인 : ----, 기타 : ----</p>
분야 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p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</p> <p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</p> <p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</p> <p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</p> <p>⑤ 시장조사 ----- ()</p> <p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</p> <p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)</p> <p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</p> <p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</p> <p>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
타 기관 사 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
전문가 자 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

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계획
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현황과 세무종합시스템의 과세 자료를 이용,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등 누락여부를 적극 조사·추징함으로써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신뢰 받는 구정 구현

I

근거

- 지방세기본법 제47조 및 지방세법 제7조
- 서울특별시 세무과-9298(2015.8.24)호 『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일제 조사추진』

II

추진 배경

- 현재 국세청에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¹⁾ 정보를 제공시 지배주주(본인)²⁾를 기준으로 과점주주(집단군)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공

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	00 : 본인, 01:배우자, 02:자, 03:부모 04 : 형제자매, 05:손, 06:조부모 07 : 02~06의 배우자 08 : 01~07이외의 친족 10 : 특수관계법인	과점주주 집단군	자료제공
	09 : 기타	해당없음	자료미제공

-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자료제공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이 탈루

1)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.

2) 1%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자,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

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 과점주주 자료 제공 필요

※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 09(기타) 집단군의 소유주식·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%를 초과한 자료 국세청에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

III 조사 개요

■ 조사기간 : 2015. 8.28 ~ 9. 18

■ 조사대상 : 2010년 ~ 2013년 귀속 878건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

※ 국세청에서 제공한 법인 중 우리구에 부동산등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자료 받춤.

■ 조사현황 :

팀 명	직 급	담 당 자	조사 건수	담 당 동	비 고
총 계			878		
법인1팀	소 계		409		
	세무7급	최주환	122	역삼1동(A),수서동	
	세무7급	최지현	61	역삼2동,일원동	
	세무7급	최상수	151	역삼1동(B),대치동	
	세무7급	김준영	75	청 담 동	
법인2팀	소계		469		
	세무7급	임기수	110	논현1·압구정·개포동	
	세무7급	이경일	162	삼 성 동	
	세무7급	신 홍	60	도곡동, 세곡동	
	세무8급	김택중	137	신사동, 논현2동	

■ 조사내용 :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(기타주주)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

■ 조사방법

●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여부 사전 조사

-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정보를 공유 세무

종합시스템과 연계, 개별 및 일괄 조회를 통해 자료 발취

- 과점주주의 주식변동에 따른 취득세등 과세 여부 확인

● 과점주주의 취득세 미부과자료에 대한 세부조사 및 취득세 추징

- 관계법령 :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7조

IV 행정 사항

■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후 결과 제출(동담당) 2015. 9.18.

※ 별첨 서식, 「과점주주 취득세 추징대상 제출서식」 참조

■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결과 보고(서울시 세무과) 2015. 9.22.

■ 누락된 취득세 추징 2015. 10.10.

■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타지역인 경우 관할구에 통보(수시)